# 인공지능 활용 원칙 (Al Principles)

### 1. OECD, 인공지능 활용 원칙 권고안 채택

- (개요) 미국 등 42개국은\* OECD 각료이사회 회의를 통해 '인공지능 활용 원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'을 공식 채택('19.5월)
  - \* OECD 36개 회원국 + 브라질 등 6개국
- 권고안은 AI 시스템을 건전하고, 안전하고, 공정하고, 신뢰할 수 있게 디자인 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하에.
- AI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'①가치관에 대한 일반 원칙'과 '②회원국 정부를 향한 정책 권고 사항'으로 구성
- (중요성) 특히 해당 권고안은 AI 기술 윤리 등에 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내놓은 첫 번째 원칙1)이라는 점에서 주목됨
- OECD에서 제시한 AI 원칙은 향후 AI 활용 및 윤리지침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참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중요²)
- 실제 '19.6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디지털 장관회의의 선언문에서는 OECD의 권고안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'G20 인간 중심의 AI 원칙'이 공식 채택됨

<sup>1)</sup> 이전에도 일본, EU 등에서 개별적으로 AI 윤리를 규정하거나 기업에서 자체적인 AI 윤리 원칙을 내놓은 적은 있음 2) 2013년 OECD가 결의한 '개인정보 보호지침'은 미국, 유럽 등 전 세계 '개인정보 보호법'의 기초가 되었음

■ (내용) AI 권고안에 포함된 '일반 원칙'과 '정책 권고 사항'은 각각 다음의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

### (1) 책임 있는 AI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 원칙

[표1] OECD AI 일반 원칙의 5가지 항목

항 목	주요 내용
① 포용적 성장, 지속 가능한 개발과 행복 증진	· AI 활용 시 인류의 능력과 창의성을 증대시키고, 여러 형태의 불평등(성, 지역 등)을 줄여나가며,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포용적 성장,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행복 증진을 추구해야 한다.
② 인간 중심적 가치와 공정성	<ul> <li>· AI 시스템은 법의 권위, 인권, 민주적 가치관,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</li> <li>· AI 시스템은 공정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</li> </ul>
③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	· 사람들이 AI에 기반을 둔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I 시스템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 있는 설명을 보장해야 한다.
④ (시스템의) 안전성, 안정성 및 견고성	<ul> <li>· AI 시스템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비합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.</li> <li>· AI 시스템은 시스템 내의 데이터, 프로세스, 의사결정과 관련한 '추적 가능성'을 갖춰야 하며,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.</li> <li>· 개인정보, 디지털 보안, 편향적 의사결정 등과 같은 시스템 관련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.</li> </ul>
⑤ 책임성	· AI 기술을 활용하는 개인 및 조직은 위 4가지 원칙에 따라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다.

\*출처: OECD 홈페이지

## (2) 국가 정책 권고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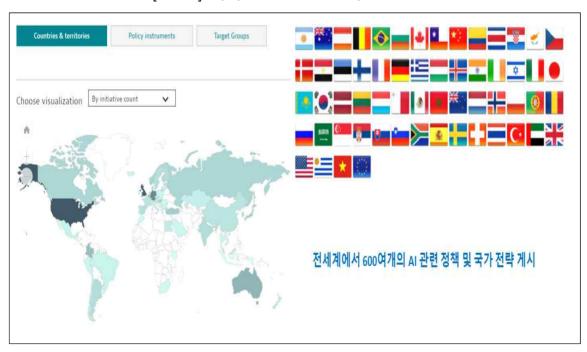
[표2] OECD AI 정책 권고 사항의 5가지 항목

항 목	주요 내용
① AI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	<ul> <li>정부는 AI 기술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.</li> <li>AI 연구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'AI 표준'의 사용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정보, 데이터 보호에 힘써야 한다.</li> </ul>
② 디지털 생태계 조성	<ul> <li>· 디지털 기술, 인프라, AI 지식을 공유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개발을 촉진하고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.</li> <li>· 이를 위하여 정부는 데이터의 안전하고, 공정하고, 합법적 이며, 윤리적인 공유를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.</li> </ul>
③ 유연한 정책 환경	<ul> <li>정부는 AI 시스템의 연구 개발 단계에서 실제 적용으로의 민첩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.</li> <li>AI 시스템의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규제, 시스템 평가 체계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.</li> </ul>
④ 인적 역량 배양 및 일자리 변혁 대응	<ul> <li>정부는 사람들에게 AI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, 변화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</li> <li>AI 기술의 활용이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, 생산성에 도움을 주며, AI 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유익이 폭넓고,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</li> </ul>
⑤ 국제협력	· AI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, 표준을 개발하며, AI 관리·감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경과 산업 분야를 넘어서 협력한다.

\*출처: OECD 홈페이지

- (정책관측소) '20.2월 온라인 AI 정책관측소를\* 설립하고 각국의 AI 관련 정책 정보를 수집
  - \* Al Policy Observatory (홈페이지: OECD.Al)
  - OECD 회원국이 AI 권고안을 이행하는지 여부, 즉, 신뢰할 수 있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
- AI 정책에 대한 국가 간 대화를 촉진하고,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허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**(블로그)** 또한, 정책관측소 내에서 AI 블로그\*를 운영하며 AI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시스템 적용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 중
  - \* Al Wonk blog

[그림1] 국가별 AI 관련 정책 분포도



\*출처: OECD AI 정책관측소 홈페이지

### 2. 미국 NAIC. 인공지능(AI) 지도 원칙을 만장일치로 채택

- (개요) NAIC 회원들은 인공지능 지도 원칙을 만장일치로 채택('20.8월)
  - 이 원칙은 AI 기술을 보험업에 적용할 시 요구되는 일반적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됨
    - 단, 강제적인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보험회사, 전문가, 감독·정책당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AI 관련 담당자\*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개발됨
      - \* 이하 'AI 활용자'
  - NAIC 산하의 '빅데이터 & AI 워킹그룹'\*에서 해당 원칙을 개발하였으며, OECD의 AI 원칙³)에 기반을 두고 있음
    - \*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orking Group
- (배경) 빅데이터, AI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보험산업의 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
  - 마케팅, 언더라이팅, 고객관리, 보험금 지급, 보험사기 방지 등 보험업 가치 사슬(Value-Chain)의 전(全) 단계에서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
  - 감독·정책당국은 AI 기술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험시장 안정, 소비자·투자자 보호에도 적합한 규제체제 마련 필요성 증대
    - 특히, 관련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\* 등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
      - \* AI 는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'Black Box' 의 속성을 갖고 있음

<sup>3)</sup>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서 2019년 5월 발표한 AI 원칙이며, 미국을 포함한 42개국이 채택

- (원칙) NAIC의 AI 원칙은 다섯 가지 주요 원리를 포함(FACTS)4)
- ① (공정성 및 윤리성) AI 시스템은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함
  - AI 기술을 활용할 시, 특정 집단(예: 인종, 성별 등)에 대한 차별을 금지
  - AI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행되어야 하며,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을 적절히 수정해야 함
- ② (책임성) AI 활용자는 AI 시스템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함
  - Al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최종 결과값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관련 보험법과 규정에 따라 보관(retained)되어야 하고 생성할 수 있어야 함
  - AI 활용자는 AI 시스템의 내재적인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법과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함
- ③ (법규 준수) AI 활용자는 적용 가능한 모든 보험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마련해야 함
  - AI 시스템이 속해 있는 지역(주)에 의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적용받고, 각 관할권의 보험법과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
- ④ (투명성) 공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AI 시스템에 관한 적극적인 공개를 약속
  - AI 활용자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AI 시스템에 사용된 데이터의 종류, 사용한 목적, 그리고 최종 결과에 대해 공개
  - 법과 규정에 따라, 이해관계자는 AI가 주도하여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문의 및 검토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하며, 해당 문의를 통해 얻은 정보는 이해 하기 쉽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

<sup>4)</sup> FACTS: Fair and Ethical / Accountable / Compliant / Transparent / Secure, Safe and Robust

- ⑤ (안전성 등) AI 시스템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, 법과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함
  - 이를 위해 AI 활용자는 시스템 운영 시 사용되는 데이터, 프로세스 및 의사 결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,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함
  - 법과 규정에 정의된 개인정보, 디지털 보안, 부당한 차별 금지 등과 관련된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'체계적인 리스크관리' 적용 필요